

# 1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수속

## 주민표 · 인감등록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는 변경 전 주거지의 시구청촌의 창구에서 전출 수속을 하고 전출증명서를 수령하여 주십시오.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하여 마이나포털(マイナポータル)에서도 전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 주거지에 살기 시작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변경 후 주거지의 시구청촌 창구에서 전출 증명서를 지참하고 전입 수속을 하십시오. 주거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류카드 ·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거지 신고 수속은 본인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주민표 신청

2012년 7월 9일부터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발행되던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 대신에 ‘주민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이 기재된 증명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창구	수수료(1 통)	신청 가능한 사람 및 필요한 서류
시민과	300 엔	<p>본 인 :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 증명서 혹은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등의 얼굴사진이 부착된 것으로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 (단,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p> <p>같은 세대원 : 상동</p> <p>대 리 인 : ①본인 직필의 위임장 ②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 증명서 혹은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등의 얼굴사진이 부착된 것으로,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 (단,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p>

※상기 필요 서류가 없을 경우, 2가지(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연금수첩, 예금통장, 진찰권 중 택 2)가 필요합니다.

### ◆ 인감등록 신청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은 1인 1개로,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의 일부를 조합한 것에 한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인감등록 시, 시민과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인감 등록	인감등록 증명서
본인	①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혹은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등의 얼굴사진이 부착된 것으로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 (단,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②인감 ③수수료 300 엔	①인감 등록증 (카드) ②수수료 300 엔
대리인	시민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민표 · 인감등록에 관한 문의

다자이후시청 시민과 TEL : 092-921-2121 E-mail : shimin@city.dazaifu.lg.jp